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47
------------	-------

발의연월일 : 2018. 4. 24.

찬 성 자 : 서형수 · 박찬대 · 전재수

최인호 · 금태섭 · 남인순

신창현 · 강병원 · 박 정

송옥주 · 신용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포함하고 있음.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
1. <u>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u>	1. <u>제37조 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설치·운영자</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